충청북도행정기구설치조례(안)

의 안 번 호	425

제출년월일 : 1995. 1. .
제 출 자 : 충청북도지사

□ 제안 이유

○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대통령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 충청북도 실·국·본부의 설치와 그 분장사무의 대강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함.

□ 주요 골자

○ 충청북도의 실·국·본부의 기구 설치

○ 실·국·본부별 분장 사무의 내용

□ 근거 법령

○ 지방자치법 제102조 제1항

○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 제7조 제1항

충청북도행정기구설치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충청북도에 두는 실·국·본부 등의 행정기구 설치와 그 분장사무의 대강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실·국·본부의 설치) 충청북도의 행정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감사실, 기획관리실, 내무국, 보사환경국, 가정복지국, 농정국, 지역경제국, 건설도시국, 민방위국, 소방본부를 둔다.

제3조(감사실) 감사실은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

1. 감사 및 비위 사건에 대한 조사 처리
2. 산하단체·협회·조합(법령상 감독권이 있는 것에 한함)에 대한 감사
3. 공직기강 확립

제4조(기획관리실) 기획관리실은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

1. 행정의 기획·조정·심사 분석
2. 예산 및 투자 심사
3. 행정 전산화 관련 업무
4. 통계의 처리와 유지 관리
5. 조례와 규칙의 심사
6. 소송사건 관련 업무와 법규의 편찬

제5조(내무국) 내무국은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

1. 의식 및 행사
2. 보안에 관한 사항
3. 인사와 포상, 각종 시험 업무
4. 지방자치단체의 지도·감독

5. 행정구역에 관한 업무
6. 지방행정기구와 정원 관리
7. 선거와 국민 투표에 관한 사항
8. 새마을과 사회 진흥
9. 생활체육의 보급
10. 지방세·세외수입의 과징
11. 회계와 재산관리
12. 민원 업무
13. 문화와 예술의 진흥

제6조(보사환경국) 보사환경국은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

1. 사회복지 향상
2. 구호와 후생에 관한 사항
3. 의무 및 약무에 관한 업무
4. 공중 및 식품위생의 관리
5. 보건에 관한 사항
6. 환경의 보호와 지도·단속

제7조(가정복지국) 가정복지국은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

1. 노인과 아동의 복지 증진
2. 부녀복지의 향상
3.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
4. 사회 복지 법인의 허가 및 지도 감독

제8조(농정국) 농정국은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

1. 농업 정책과 농어촌 개발
2. 농산물 유통에 관한 사항
3. 농업생산과 양정 업무
4. 농지의 관리와 농지의 개량
5. 농업용수의 개발과 수리 시설의 관리
6. 축산과 수산에 관한 사항
7. 산림의 보호와 개발

제9조(지역경제국) 지역경제국은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

1. 지역경제 계획 수립 추진 및 동향의 분석·관리
2. 수출 진흥과 무역 및 중소기업 육성
3. 상업·광업·공업의 육성
4. 관광의 진흥
5. 특허 관련 업무
6. 에너지의 수급 관리
7. 교통행정의 종합 기획
8. 노정 업무

제10조(건설도시국) 건설도시국은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

1. 상·하수도의 관리와 보급
2. 국토 및 자연자원의 보전·이용과 개발
3. 건축과 주택, 건설업 면허에 관한 사항
4. 도시계획 관련 업무
5. 공원과 하천 관리
6. 방재 대책과 집행
7. 중기의 관리, 등록, 검사
8. 도로와 교량의 유지 관리
9. 건설 공사용 자재 관리
10. 지적과 토지거래에 관한 사항
11. 지방산업기지 개발 지원

제11조(민방위국) 민방위국은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

1. 민방위대원 관리
2. 민방위 교육 훈련 및 계몽
3. 인력 동원
4. 비상대책에 관한 사항

제12조(소방본부) 소방본부는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

1. 화재의 진압
2. 소방장비의 수급 및 개선
3. 소방 시설의 유지 관리

제13조(담당관·과 등의 설치) 담당관·과의 설치와 그 하부조직 및 사무분장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 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설치된 충청북도의 실·국·본부는 이 조례에 의하여 설치된 것으로 본다.

참 고 자 료

□ 지방자치법

제102조 (행정기구)

①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기구를 두되, 시·도에 있어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고, 시·군 및 자치구에 있어서는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 (대통령령)

제7조 (실·국·본부 등 기구의 설치)

① 본청에 두는 실·국·본부는 조례로 설치하되, 실·국·본부의 설치 범위와 명칭 예시·및 과·담당관의 설치 범위는 별표 1과 같고, 실·국·본부의 사무 예시는 별표 2와 같다.

② 시·도의 공보 사무와 감사 사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시·도지사 밑에 공보관을, 부시장·부지사 밑에 감사실을 둔다.

③ 별표1·별표 2의 실·국·본부을 폐지하거나 그 명칭을 변경 또는 분장 사무의 폐지·조정을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내무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내무부장관은 시·도의 기구 중 국가의 위임 사무나 국가공무원의 증원·감축과 관련되는 사안에 대하여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9조 (과·담당관 등의 설치)

과·담당관의 설치와 그 하부 조직 및 사무분장 등에 관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3조(기구·정원에 대한 조례·규칙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의 지방자치단체의 기구와 정원에 관한 조례·규칙은 이 영에 의하여 새로운 조례 및 규칙이 제정·시행 될 때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부칙 제4조(기구와 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당시 설치 및 책정된 지방자치단체의 기구와 정원은 이 영에 의하여 설치 및 책정된 것으로 본다.

② 이 영 시행 당시 지방자치단체의 정원(이하 "현정원"이라 한다)이 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총정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정원은 제1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것으로 본다.

< 별표 1 > 제7조 제1항 관련

(1) 실·국·본부의 설치 범위·명칭 예시

구 분	실·국·본부 설치 범위	실·국·본부의 명칭 (예시)
충청북도	10실·국·본부 이내	기획관리실, 감사실, 내무국, 보사환경국, 가정복지국, 농정국, 지역경제국, 건설도시국, 민방위국, 소방본부

(2) 과·담당관의 설치 범위

구 분	과·담당관 설치 범위	비 고
충청북도	43 개 이내	국제통상협력실 포함

< 별표 2 > 제7조 제1항 관련 「실·국·본부별 사무분장 예시」

실·국·본부별	사 무 분 장 (예 시)
기획관리실	행정의 기획·조정·심사분석, 예산, 투자심사, 전산, 통계, 조례와 규칙의 심사, 소송사건, 법규의 편찬에 관한 사항
감 사 실	감사 및 비위 사건에 대한 조사 처리에 관한 사항
내 무 국	서무, 의전, 보안, 지방행정, 행정구역, 조직관리, 인사, 새마을, 선거, 국민투표, 지방자치단체의 지도·감독, 생활체육, 문화, 예술, 지방세, 세외수입, 기부금품 통제, 금융, 세무조사, 회계 결산, 영선, 재산관리·처분 및 다른 실·국 주관과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보사환경국	의무, 약무, 환경보호, 보건, 위생, 구호, 후생에 관한 사항
가정복지국	여성, 아동, 노인 및 청소년의 복지에 관한 사항
농 정 국	농정, 농어촌개발, 농산물 유통, 농지, 농지개량, 수리, 산림, 양정, 축산, 잠업 및 수산에 관한 사항
지역경제국	지역경제계획 및 동향의 분석·관리, 상업, 무역, 수출진흥, 광업, 공업, 특허, 전기, 연료, 관광, 운수 및 노동에 관한 사항
건설도시국	상·하수도, 건축·주택, 도시계획, 공원, 하천, 방재, 국토 및 자연자원의 보전·이용과 개발의 계획, 중기의 관리·등록·검사 및 조종의 면허, 지방산업기지 개발 지원, 간척, 지방항만·도로·교량·건설공사용 자재 및 지적에 관한 사항
민 방 위 국	민방위 및 비상대책에 관한 사항
소 방 본 부	소방에 관한 사항